

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방법

1.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-> 증명서 발급/확인 -> 보험료 납부확인서 클릭



민원여기요

건강iN

정책센터

국민과함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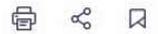
공단요모조모

Q ≡

민원여기요 > 개인민원 > 증명서 발급/확인 > 보험료 납부확인서

개인민원

보험료 납부확인서



개인민원업무 목록

증명서 발급/확인 ▲

- 자격확인서
- 자격득실확인서
- 보험료 원납증명서
- **보험료 납부확인서**
-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서
- 기타징수금 납부확인서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
-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
- 증명서진위확인
- 증명서 팩스발급 처리결과 조회

자격조회 ▼

납입내역 ▼



납부하신 보험료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국민건강보험의 본사 및 지사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

알려드립니다 ▲

-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.
-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가 해당자격의 기간입니다.
- 단, 취득일이 1일인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며, 상실일이 1일인 경우는 상실일이 속하는 달 이전달 까지입니다.
-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 시 2~3일(영업일 기준) 정도 지나 납부내역이 반영되므로,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.

건강보험

연금보험

2. 발급용도_학교제출용, 발행신청년월 설정, 세부보험_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선택 조회 클릭

건강보험

연금보험

조회

발급용도 선택

학교제출용 ▼

국문/영문 선택

국문 영문

발행신청년월

▼ ~ ▼ ▼ ▼

세부 보험

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

조회

3. 조회결과 출력 또는 팩스전송 클릭

((직장 변동, 피부양자->직장가입자 변동 등에 따라 조회결과가 다를 수 있음))

1) 해당기간 직장 변동 없는 경우

조회결과							
납부자번호	가입자구분	사업장명칭	취득일	상실일	소속지사	출력	팩스전송
	직장가입자					<input type="button" value="출력"/>	<input type="button" value="전송"/>

2) 직장 변동

조회결과							
납부자번호	가입자구분	사업장명칭	취득일	상실일	소속지사	출력	팩스전송
	직장가입자					<input type="button" value="출력"/>	<input type="button" value="전송"/>
	직장가입자					<input type="button" value="출력"/>	<input type="button" value="전송"/>

3) 피부양자-> 취업 변동

조회결과							
납부자번호	가입자구분	사업장명칭	취득일	상실일	소속지사	출력	팩스전송
	직장피부양자					<input type="button" value="출력"/>	<input type="button" value="전송"/>
	직장가입자					<input type="button" value="출력"/>	<input type="button" value="전송"/>